국악진흥법안 (김교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13 발의연월일: 2020. 9. 8.

발 의 자:김교흥・이학영・양정숙

이상직 · 강민정 · 박 정

박찬대 · 정성호 · 윤재갑

홍성국 · 안민석 · 박성민

정정순 · 하영제 · 윤관석

문진석 · 남인순 · 엄태영

허 영·노웅래·유미향

박덕흠 • 윤상현 • 유동수

임종성 · 민홍철 · 이성만

아줌(비) · 김두관 · 정일영

유기홍 • 이개호 • 송영길

허종식 · 정춘숙 · 문정복

김승원 의원(37인)

제안이유

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현재 전통문화의 큰 축인 국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별법 부재로 국악진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·계승하고 육성·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국악을 보전·계승하고 이를 육성·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악진흥기 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5조).
- 다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국 악 창작 및 향수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라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).
- 마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(이하 "지원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).
- 바. 방송사업자는 국민들의 국악문화에 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악문화 분야의 방송프로그램

- 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(안 제16조).
- 사.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, 그 밖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둠(안 제16조).
- 아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국악진흥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악을 보전·계승하고 이를 육성·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"국악"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활동인 전통음악, 전통무용, 전통연희(演戲) 등과 이를 재해석・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.
 - 2. "국악문화산업"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(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·무형의 재화·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)의 기획·개발·제작·생산·유통·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 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국악의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제5조(국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악진흥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 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
 - 2. 국악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
 - 3.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
 - 4.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
 - 5.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
 - 6. 국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
 - 7.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
- 제6조(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·시 행을 위하여 국악 창작 및 향수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 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국악 관련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

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,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국악의 보전·계승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 전·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·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8조(국악 창작 지원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문화예술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9조(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 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.
 - ③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)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(국악문화산업의 진흥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

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.

- 제11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, 대학,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(이하 "양성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 - 3.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
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
 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⑤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,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- 제13조(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·지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·지원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4조(국립국악원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, 계승하고 그 보급과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.
 -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국악 및 국악 정책 조사, 연구
 - 2.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
 - 3.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
 - 4. 국악자료의 수집, 제공, 전시, 관리
 - 5.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
 - 6.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
 - 7.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
 -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

-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 문화체육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·계승·보급·발전 및 향유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의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.
- 제15조(지원기관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 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(이하 "지원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국악 창작활동 지원
 - 2. 국악의 대중화 지원
 - 3. 국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
 - 4.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
 - 3.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원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 기 어렵게 된 경우
 -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요

- 건,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 (국악방송) ①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생활화, 그 밖의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.
 -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.
 -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국악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
 - 2. 국악의 창작, 교육, 연구 및 대중화
 - 3.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
 - 4. 그 밖에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
 -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- ⑤ 국가는 국악방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7조 (보고·검사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제18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

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 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·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, 권리·의무 및 재산은 제 16조에 따른 국악방송(이하 "이 법에 따른 국악방송"이라 한다)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에 따른 국악방송이 포괄 승계한다.
 - ③ 이 법에 따른 국악방송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 - ④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국악방송의 명의로 본다.
 - ⑤ 이 법에 따른 국악방송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행

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이 법에 따른 국악방송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
- ⑥ 이 법에 따른 국악방송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그 재산 및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수 있다.
- ⑦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임·직원은 이 법에 따른 국악방송의 임·직원으로 본다.